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9. 4) 상정
-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9. 4)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과장 김 창 열)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1조)
- 제42조 → 제80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있음

나. 반대토론

없음 있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있음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를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업간”을 “기업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9인이내의”를 “19명 이내의”로 하고, 제3항 중 “소비자등”을 “소비자 등”으로 하며, “전문가중에서”를 “전문가 중에서”로 한다.

제4조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목 (의견청취등)”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어려울 때”를 “어려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소멸된 때”를 “소멸된 경우”로 한다.

제8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48호
의결 년월일	2009. 9. 8. (제154회)

제출년월일 : 2009. 8. 2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1조)

- 제42조 → 제80조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를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업 간”을 “기업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9인이내의”를 “19명 이내의”로 하고, 제3항 중 “소비자등”을 “소비자 등”으로 하며, “전문가중에서”를 “전문가 중에서”로 한다.

제4조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목 (의견청취등)”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발생

하였을 때”를 “발생하였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어려울 때”를 “어려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소멸된 때”를 “소멸된 경우”로 한다.

제8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p>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u>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u> 자문기구인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u>각호</u>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 2. (생략)</p> <p>3. 해외자본의 관내유치 및 <u>기업간</u> 흡수·합병 추진에 관한 자문</p> <p>4.~6. (생략)</p> <p>7. <u>기타</u>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자문</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19인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시행령</u>」 제80조에 따라 ---- ----- ----- ----- -----.</p> <p>제2조(기능) ----- (이하 “위원회”라 한다)-- <u>각 호</u> ----- 1. · 2. (현행과 같음) 3. ----- --<u>기업 간</u>----- 4.~6. (현행과 같음) 7. <u>그 밖에</u> ----- ----- -----</p> <p>제3조(구성) ① ----- ---- <u>19명 이내</u>의----- -----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위원은 기업경영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기업인, <u>소비자등</u> 경제와 관련한 <u>전문가중에서</u> 시장이 위촉한다.</p>	<p>③ ----- -----<u>소비자 등</u> ----- ----- <u>전문가 중에서</u> ----- -----.</p>
<p>④ (생략)</p> <p>제4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임기간</u>으로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임기) ----- ----- -----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u>-----.</p>
<p>제6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제2조의 <u>규정에 의한</u>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u>각호</u>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6조(의견청취 등) ----- 제2조에 따라 ----- ----- ----- <u>각 호</u>----- -----.</p>
<p>1.~2. (생략)</p> <p>3. <u>기타</u>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 요청</p>	<p>1.~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 ----- -----.</p>
<p>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u>각호</u>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u>발생하였을 때</u>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u>발생하였을 경우</u>----- -----.</p>
<p>1. (생략)</p> <p>2. 질병 또는 <u>기타</u>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u>어려울 때</u></p> <p>3. (생략)</p> <p>4. <u>기타</u> 위촉원인이 <u>소멸된 때</u></p>	<p>1. (현행과 같음)</p> <p>2. ----- <u>그 밖에</u> ----- ----- <u>어려울 경우</u> -----</p> <p>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u>소멸된 경우</u> -----</p>

현행	개정안
<p>제8조 (간사)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p>	<p>제8조(간사) ----- ----- ----- <u>1명</u> ----- -----.</p>
<p>제9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u>시행에</u>----- ----- -----.</p>